

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 : 아이수루 의원
- 나. 의안번호 : 제2724호
- 다. 발의일자 : 2025년 5월 25일
- 라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
2. 제 안 이 유

- 최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해 민간정원 확대 및 확산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, 이를 위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대한 정원진흥실시계획에 있어 민간정원 활성화 및 정원문화산업 관련 국제교류, 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정원진흥실시계획 수립·시행에 있어 민간정원 활성화 및 국제교류, 협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(안 제7조)
- 나. 민간정원의 개방에 있어 정원 대상 등록 및 운영 등 지원 근거 마련(안 제10조)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도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한 민간정원 확대 노력에 맞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대한 정원진흥실시계획(이하 “실시계획”)에 민간 정원 활성화 및 정원문화산업 관련 국제 교류·협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현행 조례 제7조는 ‘정원진흥실시계획 수립·시행’을 규정¹⁾하는 것으로 제1항은 ‘정원진흥기본계획’에 따라 실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실시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.

안 제7조제2항제5호(민간정원 활성화)와 제6호(정원문화산업 국제 교류·협력)는 「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」에 따른 세부추진과제(68개) 중에 하나로, 제1호(정원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)와 제3호(정원진흥을 위한 시책 및 추진계획)에 포함되는 하위 범주의 내용이므로 조례 체계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.

- 동 조례 제10조는 민간정원 개방²⁾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, 제1항은 시장이 서울시 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할 것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, 제2항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

1) 제7조(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원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실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정원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

2. 정원 조성 현황

3. 정원진흥을 위한 시책 및 추진계획

4. 시민정원사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정원 진흥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·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

2) 제10조(민간정원의 개방)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서울시 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·증식과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한 것임.

안 제10조제2항(신설)은 ‘시장이 민간정원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전문가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.’라고 규정하는 것이나, 전문가 자문 규정은 조례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실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.

또한, 현재 서울시는 등록된 민간정원이 없는 관계로 이를 위한 법령 개선 건의³⁾ 중에 있으므로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조례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.

3) 2025년 1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(제331회 정례회, 2025.6.19.)

– 건의기관(행정안전부): 서울시 민간정원은 0개소로, 법적 제한 등으로 공간 확보 어려움이 있어, 도시자연공원구역,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정원 및 부대시설 조성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요청